2022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2년 7월 2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김 명 철 시장운영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5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대상증권의 매매 범위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상승 기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주택금융 공사를 지원하는 데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음.

다만 일부 위원은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동 MBS를 매각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 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BS를 단순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이라는 공시효과를 통해 MBS 스프레드(spread) 안정과 수요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커뮤 니케이션을 실시하여 통화정책 시그널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 동 MBS를 매각하여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하지 않도록 은행의 MBS 의무보유 규모와 기간을 강제할 수 있게 정부당국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일부 위원은 MBS를 단순매입할 경우 특정계층을 위한 대출상품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MBS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장금 리 전반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매입하는 종전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는 차별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BS를 단순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한 시장안정화 와는 차별화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MBS의 단순매입 대상증권 포함은 스프레 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공급물량이 급증할 경우 신용채권 금리가 급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 붙였음.

일부 위원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MBS의 매매 대상증권 포함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대출채권 매각후 MBS를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채권보다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자산이 축소되어 간접적으로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점은 맞지만, MBS 매각을 통한 대출여력 확대는 MBS 의무보유를 통해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와 대출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MBS를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BS를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에도 에이전시(agency) MBS나 주택담보대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등을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시 유동성공급 수단이기도 하지만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위원협의회 논의내용에 대한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은행들의 MBS 의무보유비율이 확정된 것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의무보유비율은 현재 협의중이며 향후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실무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 동 위원은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임으로써 일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문제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최대한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추후 실제 단순매입 가능성도 줄이고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의 의견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생략)